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숙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발 의 자: 이숙자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동욱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박상혁, 박중화,
서상열, 신복자, 왕정순,
윤종복, 이민석, 이종배,
장태용, 최민규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종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는 시장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음.
-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법 제44조의2(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)가 신설되면서,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.
- 개정안은 법개정 취지와 상권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"시장정비사업" 및 "시장정비구역"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)

나. 시장정비사업에서 대규모점포 특례의 적용대상을 매장면적 합계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8. “시장정비사업”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,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 건설을 위해 법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9. “시장정비구역”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·고시한 구역을 말한다.

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)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“시장정비사업”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,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 건설을 위해 법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 9. “시장정비구역”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·고시한 구역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
<u><신 설></u>	제14조(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) 법 제44조의2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한다.

제14조(생략)

제15조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는 시장정비사업내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이홍래
	☎ 02-2180-7952
	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